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趙貞順委員이 修正動議하신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 附則「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를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라는 修正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설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설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설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사서관(4급)”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지방사서관(5급)”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1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이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와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할 수 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안 계시죠?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적상” 다음에 “창안상”을 삽입한다.

제5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창안상) 창안상은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 제1항중 “공적상”다음에 “및 창안상”을 삽입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하급교육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은 하급교육청의 국장·유치원장·국립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설치) ①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의 제목 “추서”를 “대리자의 수령”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되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표창대장의 비치)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